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2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이기헌・조계원・허 영

채현일 • 이용우 • 복기왕

김태선 • 박해철 • 노종면

박수현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 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u>	
<u>서 신설></u>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
	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